

옥상방수공사 시방서

1. 공 사 명 :

2. 소 재 지 :

3. 단지규모 :

4. 공사범위 :

5. 공사재료

1) AK-500(프라이머)

2) AK-1000(탄성몰탈)

3) 하도(프라이머) : 우레탄계 용제형 (1액형)

4)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재료로 한 화학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
(2액형)

5) 상도(Top 코팅) : 내산성,내자외선이 높아 중도제를 보호해 주고 색상이 외관상
선명한 재료

6) 희석재 : 상기 동일회사 지정품 사용

6. 재료의 검수 및 보관

1) 모든 도료는 밀봉된 상태로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완전 봉인된 것이라야 한다.

7.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사용된 빈 통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고 이를 매일 작업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8. 시공방법

1) 바탕면 정리작업

가. 바탕면 정리

(1) 기능을 잃은 도막 및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준다.

(2) 정리중 발생한 폐기물은 비닐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 처리한다.

2) 탄성복합화합물을 이용한 복합 방수 공법

가. 프라이머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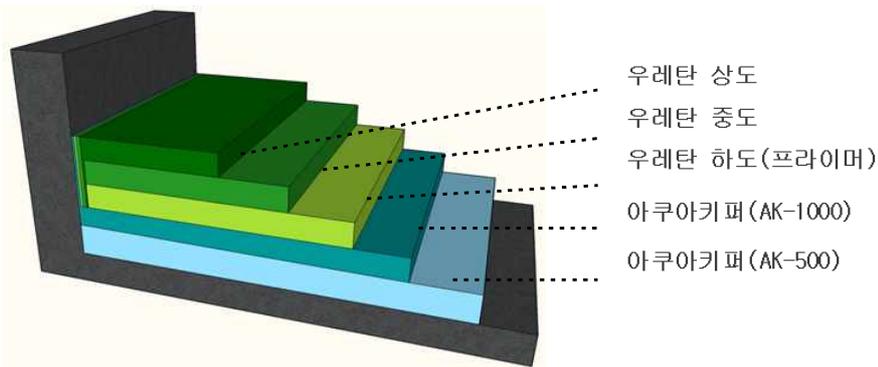
(1) 바탕정리가 끝난 후 아쿠아키퍼AK-500(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나. 탄성몰탈 도포

제 품 명	포장단위	방수 혼합비			비 고
		제품	물	탄성몰탈	
AK-1000	15KG/말	15KG	15KG	75KG	작업전 바닥을 충분히 적셔주거나 AK-500 도포

(1) AK1000 : 물 : 탄성몰탈 (1 : 1 : 3)비율로 배합하여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5분 이상 교반하여 전용레기 등을 이용하여 3mm 또는 5mm 도포한다.

(2) 수직부는 위와 동일하게 1mm를 도포한다.



3) 우레탄 도포작업 : 우레탄 도포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실시한다.

가. 프라이머(PRIMER)도포 (하도)

(1) 아쿠아키퍼가 완전히 양생된 후 로울러를 사용하여 0.2kg/㎡ 정도 도포한다.

(2)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회수는 1 ~ 2회 추가 도포한다.

(3) 프라이머와 희석재는 50:50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4) 우레탄 중도 도포

① 내구성,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와와의 접착력이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의 정격 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③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한다.

④ 1차 도포 후 돌출부위 및 기포가 생긴 곳은 보수처리 한다.

⑤ 수직면은 흐름성을 방지한 수직벽면용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평면은 자체 수평성을 갖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⑥ 기존 우레탄 면과 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도포작업을 한다.
- ⑦ 2차 도포는 1차 도포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행한다.
- ⑧ 시공이 끝나면 경화건조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⑨ 완전 경화된 후 미비한 곳을 보강처리 한다.

5)상도 작업

- ①기존의 우레탄 시공면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②프라이머 도포 작업은 우레탄 면이 완전 건조된 후 시행해야 한다.
- ③롤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코팅 마감처리한다.
- ④표면층은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제품(무황변)으로 사용한다.
- ⑤규정 배합비에 따라 배합하여 시공후 연결자국이 나지 않도록 한다.
- ⑥시공이 끝나면 건조할 때까지 적절한 보호, 보양을 하여야 한다.

9. 시공요점

- 1) 기존물탈의 취약부위는 완전 철거하고 아쿠아키퍼로 원상태 수평 보강 한다
- 2) 균열된 부위 및 수직과 수평의 접합부위의 틈 사이는 신율이 뛰어난 SEALING재 처리를 정도에 따라 처리한 후에 우레탄 도포작업을 하여야 한다
- 3) 공사로 인한 건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충격을 주는 바탕처리 작업은 금해야 한다
- 4) 제거된 폐기물은 반드시 마대에 담아 반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사항

- 1) 작업 중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 안전상방해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하며 위반하는 작업자는 경고 후 교체 하여야 한다
- 2)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한 사고(인사 및 재산상)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산재가입증명원 제출)
- 3) 시공업체는 시공 중 발주처의 재산 및 재산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는 물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주변은 작업 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사고는 시공업체에서 책임진다

11. 기타일반사항

- 1) 공사에 소요되는 기구 및 장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시공업체는 매일 출근인원 현황을 일지로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일지는 공사완료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공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발주처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발주처의 지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 4) 시공업체는 공사일정표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담보책임

- 1) 준공 후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한다
- 2) 하자발생으로 인해 해당세대의 피해 발생 시에는 공사업체가 하자 보수를 하여야 한다.

13. 준공검사

- 1) 준공검사는 총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확인을 거쳐 완료한다
- 2) 준공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보완공사를 실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